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77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간 조정(정성호의원안)	3

I. 개요

1.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77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1. 21.
- (3) 회 부 일 : 2024. 11.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가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이 아닌 연말정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3월 11일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보다 경정청구의 기한이 빠르게 도래하는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행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간 조정(정성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경정 등의 청구(제45조의2)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의 경정청구 (제1항) - 대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제5항) - 대상: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 - 청구기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u>납부기한</u>이 지난 후 5년 이내	□ 경정 등의 청구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의 경정청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경정청구기간 조정 - (현행과 같음) - 청구기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u>납부기한(원천징수대상자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소득의 법정신고기한)</u>이 지난 후 5년 이내

* 정성호의원안 2024. 11. 21. 발의(의안번호 5773)

□ 개정안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¹⁾에 해당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거주자(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²⁾(3월 11일)에서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³⁾(6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경정청구 제도는 ① ‘신고·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② ‘신고·결정 또는 경정 결정된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1)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 잡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임.

종래에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허용되었으나, 그 결과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거주자)의 경우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3년 과세기간분부터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대상자의 연말정산세액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그 원천징수대상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에 제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⁴⁾

□ 개정안은 이러한 원천징수 대상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의 다음날인 6월 1일이 아닌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인 3월 11일로 경정청구 기한이 빠르게 도래하여 납세자의 혼돈을 유발하고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경정청구 기산일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마감일의 다음 날로 조정하려는 것임.

□ 이는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⁵⁾의 기산점 불일치로 생기는 문제인데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월 1일이 아닌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인 3월 11일로 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과세표준 신고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연말정산세액 납부를 통해 결정된 세액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인 3월 11일이 경정청구의 기산일로 정해지게 됨.

한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해당 소득의 법정신고기한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6월 1일 이후를 의미하므로 경정청구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도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권리침해 예시]

구 분	내 용
신청인	2017년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미반영
목적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7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세무서 안내	2017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2018년 3월 11일로 2023년 3월 이후 경정청구 불가 통보
경정청구기간	2018년 3월 11일 ~ 2023년 3월 10일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23년 3월 이후에는 경정청구 불가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경정청구권이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산일이 조정되면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일치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현재, 근로소득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연도 6월 1일임.⁶⁾

둘째, 납세자의 혼돈을 줄일 수 있음. 가령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 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있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상이한 것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거주자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3월 11일)에서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6월 1일)로

6)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를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연말정산 시 발생한 세액의 정산이 아니라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소득세 금액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임.

조정할 경우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액 납부기한이 지나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경정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즉, 현재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세액 납부기한인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경정청구의 기산일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6월 1일로 변경될 경우,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인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6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환급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특히 즉시 환급을 기대했던 납세자에게 환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여 오히려 세액을 빨리 돌려받고 싶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음.

둘째,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3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면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세 환급금을 기다리면서 개인적인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원천징수대상자의 납부기한과 무관하게 경정청구기한을 부여하게 되므로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